

문서번호	교통행정과-32054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장	부구청장	
양은미	서원옥	이상수	이준기	07/17 김병환	
협 조	세무1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관리과장 건축과장		김용인 지덕환 최태규 정택근 이승복 임철수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 계획

2015. 7.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여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개요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2015년도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미아점 외 639개소 1,064건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m²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기간 : 2014. 8. 1 ~ 2015. 7. 31(1년간)
- 부과기준일 : 2015.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5. 10. 16 ~ 2015. 10. 31

II

부과·징수 세부내용

1.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m²이상인 시설물

※ 불법사용, 면제시설(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
다만, 부담금 부과시 면제시설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2. 납부의무자

- 2015.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과기준 : 160㎡이상)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자 간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

3. 부담금 부과기준

- 부담금 산출방법
 - 단일용도 : 각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이하
 - 7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초과 ~ 30,000㎡이하
 - 800원 : 30,000㎡ 초과부분 부터
 - 교통유발계수
 - 용도별 계수 : : 공장 0.47 ~ 판매시설(백화점,쇼핑센터)10.92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 부속시설물(공용계단, 기계실 등)은 주된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및 용도별 건축물 종류(조례별첨1)

4. 부담금 감면 및 경감대상

- 감면대상(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시조례 제3조)
 - 소유에 의한 감면시설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정당, 대한적십자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원,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등

- 사용용도에 의한 감면시설 : 주거용,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국가 등이 설치한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군사시설, 연구용 시설물, 물류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기타 타 법률에 면제하도록 규정한 시설물
- 경감대상(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기업체 수요관리제도에 의한 경감('15년도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자)
 - 경감신청서를 2015. 08.10.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수시 점검한 이행점검 결과확인서를 근거로 경감위원회가 결정한 경감률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경감률을 적용한 결정액을 고지

5. 분할납부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초과 금액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 ※2014년 분할납부자 : 삼양식품, 이마트(미아점), 현대백화점
- 신 청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기내 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내 고지서를 구분하여 고지서 수정발부
- ※ 분할 납부기한 :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Ⅲ

중점추진사항

1. 정기분 부과징수업무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관내 1,000㎡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대사작업 및 현장조사
 - 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여부 현장 확인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시설물 조사차 조사원 방문시 미사용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배부)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전체설명회 개최 (7월중 예정)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서면조사 병행

2.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고지서발급 이전 우리구 소식지(성북소리), 홈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및 책임자와 유선통화
-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3.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별 시설물에서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
- 조례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감면 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 유발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

4. 법령 개정사항 속지 철저

※ 2014.05.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및 시 조례 개정 (2014.08.01.이후 적용)

○ 단위부담금의 면적별 차등적용

〈기 준〉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14년 기준은 '14.8.1 ~'15.7.31까지를 의미하며, 건물 총 면적이 3,000㎡미만 시설물은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350원) 적용

○ 실효성 확보 위해 기업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을 조정

연번	기존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개정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20%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20%
2	부제	2부제	30%	2	부제	2부제	30%
3	주차	주차장 유료화	20%	3	주차	주차장 유료화	30%
4	수요	주차장 축소	30%	4	수요	주차장 축소	20%
5	관리	주차유도시스템	20%	5	관리	주차유도시스템	10%
6		자전거 이용	20%	6		자전거 이용	20%
7		유연근무제	20%	7		유연근무제	20%
8		통근버스 운영	25%	8		통근버스 운영	25%
9		셔틀버스 운영	15%	9		셔틀버스 운영	15%
10		업무택시제	30%	10		업무택시제	20%
11		기타	20%	11		기타	10%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 이행기준 강화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이상시 감면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시 감면

1. 2015년도 부과관련 자료제공 요청 (협조사항)

※조사 기준일 : 2014.8.1부터 ~ 2015.7.31까지 발생한 건물 현황※

- 건축과 : 연면적 1,000㎡이상의 신규 준공 및 증축현황, 멸실건물 현황등
- 주택관리과 :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공동주택)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취소(철거) 현황
- 일자리경제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내 공장등록현황
- 주거정비과 : 관내 아파트(재개발, 뉴타운) 사업승인(준공), 멸실 등 현황
- 도시계획과 : 연면적 1,000㎡이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증축, 멸실 등 현황
- 세무1과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과세자료 ,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건축물 중 소유면적이 100㎡이하인 과세자료 및 시가표준액 등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사전 홍보(8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관련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문, 이행계획실태 점검 안내문등 우편 발송
- 구청 홈페이지, 청사 내 홍보동영상 및 반상회보 「성북소리」 활용

3.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채용(8명)

- 현장조사원(7명), 전산입력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이행점검(1명)

4. 조사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현장조사 : 7~8월중

- 조사대상 (예상건수 : 약 1,064건)
 - 2014년도 정기분 기존 부과대상 시설물
 - 신축 및 증축에 의한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
- 조사내용
 - 시설물 기본현황 및 변동사항 조사 : 층수, 용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등
 - 부과대상자 인적사항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부과대상시설물 용도 및 면적
 - 면제대상 시설물 타용도 사용여부 확인
 - 기타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방문조사시 안내문(붙임3)을 배부, 소유자의 협조를 구한 후 조사

○ 시설물 방문시 미사용에 따른 감면신청 절차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홍보

5.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운영 및 경감율 결정 : 2015. 9. 1 ~ 9. 30

- 교통량감축 이행신청자 경감신청(조례 제10조) : 2015. 8. 10한

- 부담금경감율 결정통지 : 경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송부 : 2015. 10. 10한

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 : 2015. 11. 13

- 붙임 1. 시설물교통유발계수(서울시 조례 별표2) 1부.
2. 미사용신고서 및 안내문 1부.
3. 시설물 조사표 및 안내문 1부. 끝.